

청주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67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가. C와 피고 사이에 2022. 3.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14. 접수 제262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부탁에 따라 C에게 2020. 12. 13. 3천만 원을, 2020. 12. 14. 7천만 원(변제기 2021. 12. 14.)을 각 대여하였고, 이후 C는 위 차용금 중 3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가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6916)를 제기하였고, 2022. 7. 15.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22. 3.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에게 같은 날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26277호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C는 이 사건 등기가 이뤄질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이후 C를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C가 자기 소유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일정기간 동안 대여해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며, C의 재산상태 내지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